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[고영찬 의원 발의]

의안번호 2349

발의일자 : 2023. 5. 31.

발 의 자 : 고영찬 의원

찬 성 자 : 고성미 의원

1. 제안이유

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에서 설치·관리하는 시설에 대한 사용료 및 이용료 감면 등을 규정하여 국가유공자예우 강화 및 보훈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구에서 설치·관리하는 시설의 사용료 및 이용료와 보건소 등 구 가 설립·관리하는 의료시설의 진료비 감면(안 제12조 신설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1)「국가보훈 기본법」제5조
- 1)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3조
- 나. 예산조치: 필요시 예산조치

다. 기 타

- 1) 신ㆍ구조문 대비표: 별도첨부
- 2) 입법예고: 2023. 6. 1. ~ 2023. 6. 7.

서울특별시 금천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2조(복지지원 등) 구청장은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- 1. 구가 설치·관리하는 시설의 사용료 및 이용료 감면
- 2. 보건소 등 구가 설립·관리하는 의료시설의 진료비 감면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12조(복지지원 등) 구청장은 국
	<u>가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을 위</u>
	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
	<u>할 수 있다.</u>
	1. 구가 설치·관리하는 시설의
	사용료 및 이용료 감면
	2. 보건소 등 구가 설립·관리하
	는 의료시설의 진료비 감면

현 행 조 례

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[시행 2023. 01. 01.] [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 제1267호, 2022. 10. 15., 일부개정]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국가보훈 기본법」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희생·공헌자" 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- 가. 일제로부터의 조국의 자주독립
- 나.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
- 다.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
- 라.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
- 2. "국가보훈대상자" 란 희생·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 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.
- 3. "국가보훈관계법령" 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계된 법령을 말한다.
- 4. "보훈단체" 란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.

제2조의2(책무)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(이하 "구"라 한다)는 희생·공헌자의 공헌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,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한다.

②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은 희생·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존중하고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구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.

제3조(적용대상)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구에 주소를 두고, 다음 각 호

-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(이하 "단체"라 한다)로 한다.
- 1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및 「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
- 2. [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]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
- 3.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
- 4.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
- 5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
- 6. $\lceil 5 \cdot 18$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제4조(공훈선양사업)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공훈선양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- 1. 각종 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
- 2. 국경일 · 기념일 등 중요 행사시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의전상 예우
- 3.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위안행사 및 위문 · 격려
- 4. 보훈행사시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
- 5.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문화 행사 지원

제4조의2[종전 제4조의2는 제9조로 이동 〈2019.10.10〉]

제4조의3[종전 제4조의3은 제8조로 이동 <2019.10.10>]

제5조삭제 <2019.10.10>

제6조(예산지원)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.

- 1. 국가보훈대상자의 권익신장과 보훈회관 등 시설의 운영
- 2. 희생·공헌자 추모 또는 기념 사업<개정 2013.10.31>
- 3. 호국·보훈정신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

- 4. 독립운동 발상지 및 전적지 순례사업
- 5.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
- 6.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
- 7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7조(지원신청 및 보고) ① 제6조에 따라 예산지원을 받고자 하는 단체의 장은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예산 지원을 받은 단체의 장은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」에 따라 그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산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 및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을 준용한다.

제8조(보훈예우수당의 지급) ① 구청장은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신청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예우수당(이하 "수당"이라 한다)을 지급할 수 있다.

- ②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③ 삭제 <2022.10.15.>
-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유가 발생한 월의 다음 달부터 수당의 지급을 중단한다
- 1. 수급권자의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으로 지급 사유가 소멸된 경우
- 2.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거나 부적격자로 판명되었을 경우
-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.
- 1. 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당이 지급된 경우
- 2.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거짓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는 등 지급대상자의 귀책 사유가 명확한 경우

- 3.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수당이 잘못 지급된 경우
- ⑥ 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한다.

[종전 제8조는 제11조로 이동 〈2019.10.10〉]

제9조(사망위로금 지급)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사망위로금 지급대 상자는 신청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어야 한다.

- ② 사망위로금은 30만원으로 한다.
- ③ 사망위로금은 유가족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구청장에 게 신청하여야 한다.
- ④ 위로금을 지급받을 순위에 관하여는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10조(위문금 지급) ① 구청장은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지급기준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위문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 위문금 환수에 관한 사항은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11조

삭제<2022.10.15.>

관계 법 령

「국가유공자	등	예우	및	지원에	관한	법률」
					_	

[시행 2023. 1. 1.] [법률 제19092호, 2022. 12. 16., 일부개정]

제3조(정부의 시책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·발전시키며, 제2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.

□ 「국가보훈 기본법」

[시행 2017. 6. 21.] [법률 제14459호, 2016. 12. 20., 일부개정]

제5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·공헌 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,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·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(財源)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.